

노인복지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iscussion of a Revision of the Elderly Welfare Act: Focused on the Elderly Abuse

장규원* · 박호현** · 김종호***

Chang, Gyu-Won · Park, Ho-Hyun · Kim, Jong-Ho

목 차

- I. 서론
- II.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배경
- III. 노인복지법 개정안 논의의 정리 및 검토
- IV. 법률개정의 방향
- V. 결론

국문초록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있는 최상위의 법률이다. 즉,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노인들은 학대를 통해 인간이 향유해야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제정 이후 지속적인 개정이

논문접수일 : 2018.06.29.

심사완료일 : 2018.07.26.

게재확정일 : 2018.07.26.

* 법학박사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주저자)

** 경찰학박사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공동저자)

*** 경찰학박사 수료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교신저자)

이루어졌지만 노인 학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04년 노인 학대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직접적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노인학대의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결국, 법률의 개정이 노인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 복지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초기대응 및 예방에 대한 문제해결과 노인학대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대를 당한 노인의 보호 및 가해자와의 분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중앙정부 그리고 시민단체간의 다자간 협력방안이 있다. 또한 노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의 경우 시설관계자가 가해자인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가해자,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대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수강명령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가르침의 주체였으며, 가정의 옹고 그릇을 판단하는 어른이었다. 다양한 사회의 변화를 통해 노인의 지위와 역할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이 자주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른들 내지 노인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노인복지법, 노인 학대, 노인학대자의 처벌, 기본권, 존경의 대상

1. 서론

헌법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상위의 법률이다. 이러한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사회질서 내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대가족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옹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를 통한 핵가족화는 노인을 귀찮은 존재로, 효용가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문제 내지 노인 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 법률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의해서이다. 2004년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노인 학대 문제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예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인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대 자와 학대를 당한 노인을 적절히 분리하여 노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체계, 초기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노인들이 사회질서 내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II.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가.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 개념은 시대적·사회적 분위기 내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즉,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화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인에 대한 위해의 정도에 따른 협의의 학대에서 노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광의의 개념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지닌 노인학대를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보면 협의의 개념은 노인에게 가해지는 외형적 신체학대만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광의의 개념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심리적, 언어적, 정서적, 의료적, 성(性)적 학대를 포함하는 개념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방임 행위까지 광의의 학대에 포함시킬 수 있다.¹⁾

신체에 대한 학대는 유형력 행사를 통한 신체의 완전성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와 생리적 기능훼손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정신적 학대는 노인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유형력 행사는 이루어졌으나 신체적 손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적 건강을 손상시켰거나 손상을 초래할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정신적 학대의 목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노인학대가 인정되지는 않고, 일정한 행위를 통해 노인의 정신건강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면 인정된다.²⁾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권리를 인정받는다. 특히, 행복추구권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는 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기본권적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제한

1) 노인학대에 대한 통일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과 학자들을 통해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노인에 대한 학대를 노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해지는 위해(危害) 또는 일정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일회적, 반복적 행위 그리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의 결핍으로 정의하고 있다. H. O'Malley는 고의로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보호의무가 있는 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노인학대로 인식하였다. Richard L. Douglass는 Anderson, Cheryl L이 개념화했던 학대와 방임이라는 용어를 수동적 방임과 능동적 방임으로 나누어 인식의 폭을 넓혔으며, Lynn McDonald는 노인학대를 행한 자들의 범위를 설정하였고, 그 대상은 가족이나 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제한하였다. 결국, 노인학대란 가족이나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노인들에게 행하는 불합리한 행위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심리적 손해를 받게 되는 것을 노인학대로 인식하였다(오승주, “노인학대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7, 8-9면).

2) 대법원 2016.05.12. 선고 2015도6781;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도13488 참조.

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형법은 제273조를 통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학대죄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인 존속학대죄를 명문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은 제1조의2 제4호에서 노인학대의 범위를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性)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여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나. 노인학대의 유형

전통적인 효(孝)사상을 국가발전의 근본적 이념으로 삼았던 반만년 역사동안 노인은 존중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이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등 3대가 함께 살아가는 대가족 사회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은 곧 법이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였다. 즉, 효사상은 오랜 역사동안 우리나라의 민주공동체를 이끌어온 전통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대가족 중심의 가족체계는 소규모 가족 내지 핵가족체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의 부양문제, 개인주의에 의한 효사상의 부재, 노인학대 등의 문제들을 만들어냈다. 특히, 노인학대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어떠한 경우에 노인학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노인복지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개별적 학대유형을 중심으로 노인학대의 유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노인을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가 노인을 대상으로 폭력 즉,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적 학대는 외관상 인식할 수 있는 상처 및 고통을 부과하는 행위, 외부환경과의 접촉을 고의적으로 지속적인 기간 동안 차단하는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다.³⁾

3) 폭력적 행동은 외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상처 내지는 고통을 부과하는 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신체의 일정부위를 이용한 행위들이 주로 포함이 되고, 뜨거운 물이나 기름을 이용

신체적 학대는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고 성적(性的)폭행,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제한 및 통제까지도 포함이 된다. 성적 학대란 노인을 대상으로 외설적 행동을 보이거나 직접 노인들에게 외설적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즉, 노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노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행위 또는 성기의 노출 그리고 매춘행위와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받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성적 학대에는 정당한 목적의 의료행위, 일반적인 간호 및 간병행위 그리고 합법적인 애정표현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신체적 학대는 일정한 행위에 강제성을 요구하는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⁴⁾

하지만 의사나 전문가에 의해 건강의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적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 매뉴얼을 통해 신체적 구속과 비슷한 최후수단으로서 신체적 제한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⁵⁾

이러한 신체적 제한은 노인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는 제한되며,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 및 종사자 등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 인력이나 간병 인력이 없는 경우, 치료의 개선이나 증상의 완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인 신체적 제한을 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신체적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노인의 정신적 상태, 신체에 제한이 이루어진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한 합리적 이유의 기재, 노인 본인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격리나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에

해 화상을 입히거나 칼, 도끼, 낫 등의 도구를 이용해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또한 노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고통 및 아픔을 부과하는 것도 포함이 되며, 먹기 싫은 음식들을 강요하거나 의사나 전문가의 진단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아픔이나 고통을 주는 재활 치료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신체적 구속 및 화학적 구속으로 강제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정수일·박미란, “노인 학대의 유형별 분류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연구」 제1권 제1호, 산업진흥원, 2016, 97-98면).

4) 박영숙, “효복지를 통한 교정복지 실천 방안-노인 학대 범죄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제 36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119-120면.

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보건복지부, 2013, 32면.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인이 동의하지 않고 가족과의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체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⁶⁾

(2) 정신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학대는 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부과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심리적 학대, 언어적 학대로 표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의성을 지닌 언어적 학대 및 부작위에 의한 학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관상 인식이 가능한 신체적 학대와는 달리 정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측정에 있어서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 학대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고의성을 지닌 정서적 해악(害惡)을 부과하는 것으로 심리적 고통을 발생시키는 행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가 포함된다.⁷⁾

(3) 경제적 학대

경제적 학대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자들이 노인 소유의 재산을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전하거나 소모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말한다. 이러한 경제적 학대는 경우에 따라서 폭력행위, 기망행위, 불법적 대리권행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결국, 부모의 재산상속과 관련해 발생하는 자식들의 학대행위,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의 재산, 수당, 연금 등 가정생활의 중

6) 신체적 제한과 함께 의학적 진단의 결과 약물의 투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투여해 노인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단지 종사자들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경우를 '화학적 구속'이라고 한다(오승주, 앞의 글, 2017, 31면).

7) 정서적 학대에 대한 다양한 예들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예들을 설명할 수 있다. 노인 부양의 어려움을 직접 노인에게 표현하는 경우, 집안에 중대사가 있을 때 고의적으로 소외시키는 경우, 무례한 행동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에게 육체적 노동을 시키는 경우, 노인의 친인척이나 친구의 방문을 꺼리는 경우, 노인에게 간접적 위협으로서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는 경우, 노인의 가족을 혼계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간섭으로 인식해 화를 내는 경우, 노인의 사회적 활동 및 종교적 활동을 일방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노인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즉, 폭언, 협박, 모욕 등의 방법을 통해 억압적 태도, 무시, 괴롭힘 등에 의한 정신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강동욱·문영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검토와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37-39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2013, 82-105면).

요한 기초가 되는 것들을 착취함으로써 부모를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모두 경제적 학대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친족에 의해 노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처분되거나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는 행위도 경제적 학대에 해당한다. 또한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유자를 지명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등도 경제적 학대에 포함되며, 연금 및 임대료에 대한 일정한 소득을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이 부당하게 취득하는 경우 등도 경제적 학대에 해당한다.⁸⁾

(4) 방임

방임이란 일반적으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자가 노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법이 행위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겨 관여하지 않는 행위로서 적법과 위법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렵고,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처벌도 받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의 유형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살핌을 제공하는 자에 의한 방임과 본인 스스로에 의한 방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살핌을 제공하는 자에 의한 방임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음식, 의류, 주거 등의 일상적 생활을 위한 기본적 물품의 제공이 보장되지 않고, 간호사나 간병인에 의한 간호나 보살핌이 보장되지 않으며, 고의성을 가지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⁹⁾

노인의 자기방임은 노인 자신이 음식, 의류, 주거, 치료 등의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요건들을 고의적으로 포기하거나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스스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 행위로 설명이 된다.

8) 이미진·김혜련, “노인학대유형별 노인 및 학대행위자 특성 비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71권 제3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 64-65면.

9)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배변, 입욕, 식사, 안전 등의 문제들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즉, 환자 및 입소자의 신체적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소홀하게 인식하며, 시설 내의 각 구역마다 인원의 충분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박완규, “노년기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17-18면).

그리고 스스로의 위생이나 환경들이 청결하지 못하며,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을 염려하지 않는다.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진 노인들은 가족 및 친인척 그리고 지역사회, 국가의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의 청결과 건강을 돌보지 못하게 되고, 자기방임의 결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자기방임의 특징은 자기 관리의 부재, 환경적 불결함, 사회적 고립과 외부에 대한 저항 등을 들 수 있다.¹⁰⁾

Ⅲ. 노인복지법 개정안 논의의 정리 및 검토

노인복지법은 제1조에서 ‘노인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질환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노후 생활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부족, 노인 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절차에서의 문제, 학대를 당한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의 부재,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부재, 학대를 당한 노인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2017년 이후 발의된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 분석을 통해 노인 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서영교 대표발의 법안’¹¹⁾

10) 김말영·이재정, “남성노인의 자기방임에 대한 위험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1권 제3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 32-35면

11) 2017년 2월 21일 서영교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의안번호5714) 으로서 김상희, 윤소하, 전현희, 김해영, 박홍근, 황희, 박재호, 박찬대, 김철민, 진선미, 이찬열, 조배숙, 추혜선, 한정애, 김영춘 등 총 16인이 발의하였다.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4년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가 설치·운영되었고, 2015년 약 1만 1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3천 건 이상이 학대사례로 판정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학대사례가 실제로 노인들에게 발생한 경우 긴급전화번호(1577-1389)를 노인들이 항시 인지하고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긴급전화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노인들이 이러한 긴급전화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긴급전화 번호를 노인들이 인지하기 쉬운 번호로 바꾸고, 이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 학대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안 제 39조의4).

2. ‘최도자 대표발의 법안’¹²⁾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의료기사가 직무수행에 따른 노인 학대를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인, 의료기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

12) 2017년 5월 11일 최도자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의안번호6844) 으로서 황주홍, 조 배숙, 김광수, 박지원, 강창일, 정인화, 주승용, 신경민, 박선숙, 이동섭 등 총 11인이 발의하였다.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인과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에 알려 의료인,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안 제61조의2 제5항 신설).

3. ‘김상훈 대표발의 법안’¹³⁾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벌 또는 보안처분인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및 면제가 결정된 날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노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2016년 4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범발생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노인복지법은 법률을 시행할 당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노인 학대에 대한 전력조회 대상에는 포함을 시키고 있어 법률시행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노인 학대와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행위를 통해 형벌 또는 보안처분인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부여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결국, 법원의 이러한 명령은 노인 학대에 관한 전력이 있는 자의 취업제한 위헌소지를 해결하고, 취업제한의 시기를 명확하게 정해 법률적 혼란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안 제39조의17).

13) 2017년 6월 5일 김상훈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의안번호7198)으로서 강석진, 정양석, 유승민, 김명연, 김승희, 인재근, 송석준, 김순례, 곽상도 등 총 10인이 발의하였다.

4. 시사점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시대적 발전을 이룩해온 국가에서의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가르침의 대상이었다. 과거 대가족제도를 통해 가정의 울타리를 형성했던 시기에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곧 법이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발전으로 인해 핵가족화가 형성됨으로써 노인에 대한 존경보다는 귀찮은 존재로, 효용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 학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의 정의 및 행위주체 범위 규정만을 명시하고 있어 2016년 12월 30일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정 노인복지법도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보다는 발생사실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가족성원에 의한 학대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들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연계를 바탕으로 노인 학대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종사자 및 관련자에 의한 신체구속 등 노인의 불필요한 자유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상시적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들과 연계해 학대 가해자를 교육하고, 교육의 확대를 위한 수강명령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넷째, 징벌의 성격을 가지는 손해배상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즉, 악의적 내지 고의적 행동에 의해서 발생한 학대행위를 징벌함을 목적으로 상습적 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 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의 사전적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효과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마련을 통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단순히 학대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 학대라는 사회적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근본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V. 법률개정의 방향

2017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7,288명으로 전체인구 51,753,820명 중 14%를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어 고령사회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¹⁴⁾ 이러한 통계자료는 우리나라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국가적·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노인 학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의 마련을 통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단지 형량을 높이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2017년 이후 발의된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도출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1. 노인 학대 방지 교육을 통한 인식전환

유교사상은 부모를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한다. 과거 대가족제도를 통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은 가정의 법이었고, 삶의 지혜였다. 즉, 어른과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고 가족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노인은 귀찮음의 대상이 되었고, 효용 가치를 상실한 주체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일반 과목에 노인공경에 대한 과목을 설치해 공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노인관리 및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는 어떠한 행동들

14)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년 9월 4일) 참조.

이 노인학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을 갖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고, 프로그램은 학대의 종류, 구체적 사례, 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학대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구체적 대처방안, 신고자의 신고의무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¹⁵⁾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인을 학대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시키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강명령 제도를 통해 노인학대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학대노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인지하게 하여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강명령제도는 노인 학대에 대한 상습적·반복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교정 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와 연계된 교육기관에서 인권존중 교육 및 효(孝)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사회적응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⁶⁾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발생한 행위의 재범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회복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서로의 욕구를 파악하며, 서로 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각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회복적 사법’의 적용이 요구된다.¹⁷⁾

2. 노인 학대 발생에 대한 대응책 강화

노인복지법은 제39조의7 제2항에서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

15) 박영수, “노인학대의 현황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전국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7, 112면.

16) 오승주, 앞의 글, 2017, 97-100면.

17) 백일홍·박호현, “범죄피해자를 위한 초기대응으로 경찰의 피해자전담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21-23면.

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가 이루어진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와 함께 동행 하지 못한 경우 학대를 당한 노인의 의사와 다르게 강제적으로 노인에게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법률에 의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학대를 당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더라도 다른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의무적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⁸⁾

노인 학대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하지만 노인에게 대한 육체적·성(性)적 학대행위 등 직접적인 학대가 아닌 경우 경찰이 노인학대자를 수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의 직원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현장출입 및 조사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하는 경우 노인학대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학대행위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노인 학대에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들에게도 노인 학대와 관련해 사건조사 및 사건처리에 대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또한 신분에 있어서도 노인복지시설 소속의 직원보다는 전문조사관 제도를 통해 노인학대의 효과적인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⁹⁾

3. 노인 학대 신고제도의 개선 및 처벌강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

18) 이현민·조문기, “노인학대의 현황 및 개입과정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일본문화연구』 제64권, 동아시아일본학회, 2017, 259-261면.

19) 백일홍·박호현, 앞의 글, 2016, 20-21면.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은 각 법률규정을 통해 12가지의 직업군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각 법률을 통해 강제적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신고의무를 가진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1항).

하지만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과태료의 부과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즉, 노인 학대에 대한 인지방법, 신고요령,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처방안 등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인 학대를 신체에만 한정하지 않으며, 신고의무자의 신고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질서별인 과태료부과에서 형벌부과로 변경하여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대신고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고대상사례, 신고의심사례 등을 제시하고 철저한 신고교육을 바탕으로 의무신고 대상자가 신고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²⁰⁾

또한 보호처분에 대한 불이행, 노인을 학대한 자가 보호처분 및 임시조치 그리고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한 경우, 불이행에 대한 경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벌금 및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명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대를 당한 노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의를 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하며, 노인 학대범죄 신고의무자를 비롯해 신고를 한 사람은 노인 학대범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²¹⁾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책임에서 분리된 민사책임에 다시 형사책임을 부여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보다 많은 배상금액을 인정함으로써 만들어진 제도가

20) 박호현·김명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정신장애자의 처우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7, 138-139면.

21) 백일홍·장규원·박호현,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경찰의 활동과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2015, 254-255면.

다. 즉,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의 내심적 상태가 ‘악의’의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대받은 노인과 학대를 가한 노인보호시설 내 종사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결국, 노인보호시설 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근로계약상 고용자와 노동자 관계이기 때문에 노인보호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命)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악의’의 내심상태를 가졌거나 ‘고의’의 내심상태를 가지고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가해자에 의한 반복적·상습적 학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²²⁾

4. 학대노인을 위한 시스템 개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를 받은 노인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기관에 소속된 인력의 부족으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응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학대자와 분리하여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조치 등이 요구된다. 또한 학대를 당한 노인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임시숙소 등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학대자를 노인과 분리시킬 장소의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²³⁾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노인 학대 발생 시(時) 초기개입을 위한 지침들을 학대노인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와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구제방법들을 알려야 한다. 또한 학대를 통해 학대가해자와 분리된

22) 박창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78면; 이진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78호,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2018, 432-439면.

23) 백일홍·장규원·박호현, 앞의 글, 2015, 249면.

노인에 대해 자립을 위한 장기 주거지원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대를 당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를 비롯해 국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의 협력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학대를 당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²⁴⁾

경찰이 학대노인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학대노인들의 지원이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 각자가 노인 학대에 대한 의의, 학대를 당한 노인들의 심리상태 등 다양한 이해의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교육원에서는 ‘피해자 서포터 전문화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이 일부 경찰관들에게만 이루어져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경찰시험에 합격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교육원 등에서 학대를 당한 노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식습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직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각 계급 및 보직에 따른 단계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²⁵⁾

V. 결론

효(孝)사상은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대한민국의 이념이며, 유교사상을 간직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상이었다. 그러므로 어른은 또는 노인은 젊은 세대에 의한 존경의 대상이었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의 주체였다. 특히, 대가족체제를 형성한 시기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할아버지의 말씀이 곧 법이었고 삶의 이치였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대가족체제의 가족형태는 핵가족화로 변화하였고 과거와는 달리 어른과 노인은 귀찮은 존재, 남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나 노인들이 과거와 같은 존경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

24) 박호현·김명대·김종호, “복지경찰에 관한 논의-범죄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6권 제4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17, 88-89면.

25) 박호현·김명대·김종호, 위의 글, 2017, 85-86면.

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 내에서 향유해야 할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노인 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특히, 2004년 이후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노인 학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므로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비롯해 국가기관 및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보호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내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관련자에 의한 과도한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국가기관에서는 노인 학대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 가해자, 학대노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재범방지를 위해서 수강명령제도를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대를 당한 노인과 노인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외에도 노인보호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는 노동관계에 의한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학대를 당한 노인은 노인보호시설 관계자와의 계약 관계 형성으로 보호시설 내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命)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단지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고의’에 의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노인 학대를 징벌함으로써 노인학대자에 의한 학대의 상습적·반복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와 재범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개정 방향은 단순히 노인 학대를 가한 대상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필요성 및 당위성을 근본적 바탕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및 재범발생 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동욱·문영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검토와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김말영·이재정, “남성노인의 자기방임에 대한 위험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1권 제3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
- 박미란, “효복지를 통한 교정복지 실천 방안 -노인 학대 범죄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제36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 박영수, “노인학대의 현황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전국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7.
- 박영숙, “효복지를 통한 교정복지 실천 방안-노인 학대 범죄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제36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 박완규, “노년기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박창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 박호현·김명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정신장애자의 처우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7.
- _____. 김명대·김종호, “복지경찰에 관한 논의-범죄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6권 제4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17.
- 백일홍·박호현, “범죄피해자를 위한 초기대응으로 경찰의 피해자전담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 _____. 장규원·박호현,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경찰의 활동과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2015.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보건복지부, 2013.

- 오승주, “노인학대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7.
- 이미진·김혜련, “노인학대유형별 노인 및 학대행위자 특성 비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71권 제3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
- 이진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78호,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2018.
- 이현민·조문기, “노인학대의 현황 및 개입과정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일본문화연구」 제64권, 동아시아일본학회, 2017.
- 정수일·박미란, “노인 학대의 유형별 분류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연구」 제1권 제1호, 산업진흥원, 2016.

2. 외국문헌

- O'Malley, H., Sears, H., Perez, R., Mitchell, V. & Knuepfel, C., *Elder abuse in Massachusetts A survey of professionals and paraprofessionals*, Legal Research and Service for the Elderly, Boston. MA., 1979.
- Richard L. Douglass, “Domestic Neglect and Abuse of the Elderly: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Servic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Vol. 32 No. 3*, 1983.
- Anderson. Cheryl L., “Abuse and Neglect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Vol. 7 No. 2*, 1981.

3. 기타자료

- 대법원 판례(2016.05.12. 선고 2015도6781)
- 대법원 판례(2015.12.23. 선고 2015도13488)
- 2017년 2월 21일 서영교의원 대표 발의 개정법률(안)(의안번호 5714)
- 2017년 5월 11일 최도자의원 대표 발의 개정법률(안)(의안번호 6844)

2017년 6월 5일 김상훈의원 대표 발의한개정법률(안)(의안번호 7198)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보도일자 : 2017년 9월 4일)

[Abstract]

**A Study on Discussion of a Revision of the Elderly
Welfare Act: Focused on the Elderly Abuse**

Chang, Gyu-Won

*First Author, Professor, Division of Pol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Park, Ho-Hyun

*Co-Author, Lecturer, Division of Pol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Kim, Jong-Ho

*Corresponding Author, Lecturer, Division of Pol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The constitutional law is the supreme law that stipulate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other words, the basic right is ensured, and we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within social order through the constitutional law. Nevertheless, the elderly people who should be respected are violated of their right when they are abused. The Elderly Welfare Act. was enacted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it is criticized for failing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elderly abuse, although the revision was made after the enactment of the bill.

The law was revis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abuse in 2004, and it was assessed as a direct measure to prevent it. However, the elderly abuse has increase. Ultimately, the revision of the law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abuse, but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Accordingly, a revision should be made to solve the problems. In order word, the way of initial response and prevention of the abuse should be addressed, and the punishment of the abusers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the protection and isolation of the abused should be effectively established if the elderly abuse happen. After all, these efforts will prevent the elderly abuse and prevent repetition.

The elderly was the object of respect, the subject of teaching, and ones who judged the right and wrong in the family. It is true that the status and role of the elderly have decreased as a result of social changes, bu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ble to be developed into a sovereign state by their efforts.

Key words : the Elderly Welfare Act, the Elderly Abuse, Punishment of the Abusers, Basic Human Rights, Object of Respect